[서식 예] 지료청구의 소(법정지상권자에 대하여 청구)

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지료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 대 151㎡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매월 ○○○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. 피고소유인 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○ 대 151㎡(다음부터 위 토지라고 함)를 소외 ◈◆◆↑ 신청한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위 토지의 지상에는 피고가 건축하여 원시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07.6㎡(다음부터 위 건물이라고 함)가 있는

데, 위 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소외 ���가 근저당권을 설정 받지 못하였다. 위 건물을 제외한 위 토지에 대하여서만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매절차에서 위 건물은 매수하지 못하였습니다.

- 3. 그러므로 피고는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위 건물의 사용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지만, 법정지상권자라 할지라도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는 있는 것이므로,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임차료상당의 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년이지나도록 단 한 푼의 지료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24개월이 되는 20○○. ○○. ○.까지의 위 토지에 대한 차임상당의 ○○○원(금 ○○○원×24개월) 및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20○○. ○○. ○○.부터 위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금 ○○○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의 1, 2

각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(토지, 건물)

1. 갑 제2호증

토지대장등본

1. 갑 제3호증

건축물대장등본

1. 갑 제4호증

매각허가결정문사본

1. 갑 제5호증

매각대금납입영수증

1. 갑 제6호증

통고서(내용증명우편)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	T	T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 멸 시 효 기 간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기 타			

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